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04

발의연월일: 2022. 11. 10.

발 의 자:백혜련·김영진·김철민

박상혁 • 박재호 • 송기헌

윤관석 · 임호선 · 전용기

최종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초기에는 지급결제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인식되고 있음.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가상자산업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외에 가상자산업 전반을 위한 입법은 가상자산의 초국격성을 감안하여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 자산거래 규율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해야 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안정된 성장을 도모하는 등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 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시장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가상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 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시 감시·신고의무 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 터 제9조까지).

- 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 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이 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5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 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2. "가상자산업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 3. "이용자"란 가상자산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또는 보 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또는 가상자산 간 교 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 제5조(예치금의 신탁) 가상자산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 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 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 2. 이용자가 소유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② 가상자산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③ 가상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산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7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8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 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 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당해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 역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 인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3.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4.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④ 가상자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생성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 제10조(가상자산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자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업자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 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2. 경고
- 3. 주의
-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5. 수사기관등에의 통보 또는 고발
- ④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가상자산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해임권고
- 2. 6개월 이내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제1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제5장 벌칙

- 제12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並科)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8조를 위반한 자가 제3자의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차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몰수·추징) ① 제8조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②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 제14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 제5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 3. 제9조를 위반하여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신고를 포함 한다)를 취하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에 따른 검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